

 건설교통부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들 Trust Builder		보 도 자 료		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
		배 포 일 시	2007. 6. 13(수), 총4매	
담당 부서	산업입지정책팀	담당자	• 팀 장 김채규, 사무관 남상현 • ☎ (02)2110-8496 nsh30@moct.go.kr	
보 도 일 시		2007년 6월 14일 조건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하위법령 개정 추진

□ 건설교통부는 지난 4.6일 개정·공포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.14일 입법예고 하였다.

□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① 건축사업 가능 민관합작법인 요건 규정

- 이번 산업입법 개정시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,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외에 일부 건축까지 일괄로 개발토록 허용함에 따라,
-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자와 공공사업자가 최소한 100분의 20 이상 투자한 법인에 한하여 허용하여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또한 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시는 단지내 도로 등 기반 시설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②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확보 최소기준 비율 규정

-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는 유상공급면적의 50%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,
- 최근 산업단지가 복합화,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복지, 지원, 주거시설등 복합단지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.

③ 일반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기준 설정

- 현행 지방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나, 지역여건,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개도 지정권을 이양하였으며,
-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다.

④ 준공된 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

- 산업단지의 면적 변경, 주요유치업종 변경, 토지이용 계획의 10%이상 변경을 제외하고는,

-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실시계획 수립이나 도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여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였다.

⑤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등 규정

-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는,
- 현행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인 3만제곱미터 이상 이면서, 부지내 50%이상이 공장용지로 점유하고, 5개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며, 시장·군수가 입주기업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·개발하도록 하였다.

⑥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기준 및 방법을 규정

- 개별공장의 입지유도를 통해 환경문제의 극복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공장입지유도지구는
- 시장·군수가 집단화가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태등을 조사하여 지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
-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100분의 50이상 공장을 유치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국고지원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.

7 기타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규정

- 기존산업단지의 유형을 변경(예:농공단지→일반산업단지) 하기 위한 전환요건으로서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와 준공 후 30%이상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였음
- 그리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개발과정에서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시행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,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도 30%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치 않거나,
 -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사업시행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교체하도록 하여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.

□ 앞으로 입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령(안)을 확정 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금년 10.7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